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설명자료

전문위원 전유재

I. 양형기준 설정의 필요성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전자금융거래범죄는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각종 범죄에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은닉을 가능하게 하는 범죄임. 또한 인터넷 불법금융광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전자금융거래 범죄인 통장매매 행위임¹⁾
- 이러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에 대한 적절한 양형기준 설정이 필요함
- 징역형(단일범) 사건이 424건(2006년~2016년)으로 징역형 처벌례가 다수 존재함

1) 2016년 기준 불법금융광고 적발건수는 총 1,581건으로 통장매매 566건, 미등록대부 430건, 작업대출 299건, 휴대폰 소액결제현금화 202건, 개인신용정보 매매 69건, 신용카드 현금화 15건임

II. 양형기준 설정대상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구성요건 및 법정형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21조의4 ²⁾ 제1호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한 자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호	제21조의4제2호를 위반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한 자	
	제3호	제21조의4제3호를 위반하여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킨 자	
	제4호	제26조 ³⁾ 를 위반하여 전자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제28조제4항에 따라 이를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제49조 제2항	제1호	접근매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호	위조되거나 변조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제3호	분실되거나 도난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제4호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제5호	강제로 빼앗거나, 횡령하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판매·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한 자	
제49조 제3항	형법 제214조	행사할 목적으로 전자화폐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15조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전자화폐를 작성하거나 전자화폐의 권리 또는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자	10년 이하 징역
	형법 제216조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전자화폐를 작성하거나 전자화폐에 허위사항을 기재한 자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형법 제217조	위조, 변조, 작성 또는 허위기재한 전3조 기재의 전자화폐를 행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수출한 자	10년 이하 징역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제3항 ⁴⁾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호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3호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제4호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제5호	제28조 또는 제29조 ⁵⁾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행한 자	
	제6호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또는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제7호	제37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제8호	제37조제3항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	
	제9호	제3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한 자	
	제10호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제49조 제5항 ⁷⁾	제3호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제4호	제3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한 자	
	제5호	제37조제3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준 자	
	제6호	제45조제1항 ⁸⁾ 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과표·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3) 제26조(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인적 사항
2.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4)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5) 제28조(전자금융업의 허가과 등록)

① 전자화폐의 발행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9조(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① 전자채권의 등록 및 관리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6) 제37조(가맹점의 준수사항 등)

① 가맹점은 직불전자지급수단이나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이하 "전자화폐등"이라 한다)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이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가맹점은 이용자로 하여금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는 행위

2. 양형기준 설정범위 검토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 2호 ⇨ 포함

- 실무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대부분을 차지함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 4호 ⇨ 포함

-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제4항 제3호(접근매체 질권 설정)의 경우 비록 사례는 적으나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형으로서 제49조 제4항 제1호, 제2호와 구분하여 본 유형을 제외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4호(접근매체 양도·양수 등 알선·광고)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유형으로서 실무에서 상당수 처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음

3. 최종 양형기준 설정범위

적용법조		구성요건	법정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제4호	제6조 제3항 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4. 가맹점의 이름을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④ 가맹점이 아닌 자는 가맹점의 이름으로 전자화폐등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제1호, 제2호는 삭제되어 별도로 검토하지 않음

8) 제45조(합병·해산·폐업 등의 인가)

①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합병

2.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와 양수

Ⅲ. 범죄유형 분류

1. 유형분류 검토

- ▣ 실무상 단순 범행과 조직적 범행 사이에 형량범위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 ▣ 범행이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범행 대상 접근매체를 매개로 보이스피싱 등 후속범행이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 및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크므로, 행위방식(일반/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을 소유형의 기준으로 삼아 구분할 필요성이 있음
- ▣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목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여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또는 다른 범죄(예를 들면 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함
- ▣ 「일반적 범행」은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에 해당하지 않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의미함

2. 최종 유형분류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IV. 형량범위 검토

1. 권고 형량범위 설정 기준

▣ 양형기준 해설상의 형량범위 설정 근거

- 양형기준은 전형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내지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양형실무에 대한 개선 의견이 높고, 보다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범죄 및 법정형이 상향 조정된 범죄에 관해서는 형량범위 설정에 있어 적절한 규범적 조정을 가함

▣ 법정형 및 행위태양이 유사한 범죄군의 양형기준을 참조함

2. 형량범위 검토

1) 양형자료 조사결과

▣ 선고내역

단위: 명, %

법조		선고내역		전체
		실형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④1)	수	155	822	977
	비율	15.9	84.1	100.0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④2)	수	125	836	961
	비율	13.0	87.0	100.0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④3)	수	0	2	2
	비율	0.0	100.0	100.0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④4)	수	4	11	15
	비율	26.7	73.3	100.0
전체	수	284	1,671	1,955
	비율	14.5	85.5	100.0

■ 형량분포

단위: 명, %

법조		형량(월)															전체	
		1	2	3	4	5	6	7	8	9	10	12	14	18	20	24		36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④1)	수	2	7	17	352	14	397	0	99	0	40	39	0	6	0	2	2	977
	비율	0.2	0.7	1.7	36.0	1.4	40.6	0.0	10.1	0.0	4.1	4.0	0.0	0.6	0.0	0.2	0.2	100.0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④2)	수	0	6	14	426	6	309	1	68	1	60	47	3	13	1	5	1	961
	비율	0.0	0.6	1.5	44.3	0.6	32.2	0.1	7.1	0.1	6.2	4.9	0.3	1.4	0.1	0.5	0.1	100.0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④3)	수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비율	0.0	0.0	0.0	10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전자금융 거래법 (제49조 ④4)	수	0	0	0	1	1	4	0	2	0	5	2	0	0	0	0	0	15
	비율	0.0	0.0	0.0	6.7	6.7	26.7	0.0	13.3	0.0	33.3	13.3	0.0	0.0	0.0	0.0	0.0	0.0
전체	수	2	13	31	781	21	710	1	169	1	105	88	3	19	1	7	3	1,955
	비율	0.1	0.7	1.6	39.9	1.1	36.3	0.1	8.6	0.1	5.4	4.5	0.2	1.0	0.1	0.4	0.2	100.0

■ 적용법조별, 조직적 범행 여부에 따른 형량 분포⁹⁾

적용법조	평균형량 (수, 비율)	조직적 범행 여부	
		조직적	비조직적
제1호	6.07월 (983건, 50.25%)	9.15월 (116건)	5.66월 (867건)
제2호	(2호) 5.41월 (776건, 39.67%)	10.54월 (48건)	5.07월 (728건)
	(3호) 8.73월 (183건, 9.35%)	10.12월 (114건)	6.43월 (69건)
제3호	-	-	-
제4호	8.07월 (14건, 0.71%)	9.43월 (7건)	6.71월 (7건)
전체평균	6.07월 (1,956건, 100%)	9.78월 (285건, 14.57%)	5.44월 (1,671건, 85.42%)

9) 전문위원이 양형지원단으로부터 본건 통계자료 산출에 활용된 판결의 사건번호 등을 전달받아 해당 판결 모두를 전수 조사한 결과임. 양형지원단 통계자료와 구체적인 수치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2) 형량범위 제안(일반적 범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2월

- 기본영역은 현행 양형실무에 대체로 부합함
- 일반적 범행의 경우 징역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죄질이 상당히 나쁜 사례까지 포섭할 필요가 있으므로 가중영역의 형량범위 상한은 1년2월로 설정

3) 형량범위 제안(조직적 범행)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 기본영역은 현행 양형실무에 대체로 부합함
- 양형자료 조사결과상 징역 2년6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0.2%에 불과하고, 죄질이 나쁜 사례는 다수의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특별가중영역에 포섭될 것으로 예상됨

3. 최종 권고 형량범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적 범행	- 6월	4월 - 10월	6월 - 1년 2월
2	영업적·조직적·범죄이용목적 범행	- 8월	6월 - 1년 6월	10월 - 2년6월

V. 양형인자

1. 양형인자 설정의 기준

- ▣ 과거에 실제로 선고된 판결을 분석하여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 요소를 추출하고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 양형인자를 추출하거나 그 영향의 정도를 평가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규범적인 고려 요소도 적절하게 반영함

2. 구체적인 양형인자 검토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행위자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적 수사협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는 동종 실행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1) 특별감경인자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서는 다수 공범이 관여되는 경우가 많음. 그중 주범의 강요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단순 공모에 그칠 뿐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은 소극적 공범의 경우에는 주범과의 가벌성 차이가 큼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또는 대출이나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에는 범행동기를 유리한 양형인자로 참작할 필요가 있음
- 양형인자의 정의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한 경우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도 아니한 경우
 - 가족·고용관계 등으로 긴밀한 인적관계에 있는 본범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범행에 이른 경우
 - 대출 또는 취업 등을 이유로 한 제공 요구에 응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단순가담

- 범행을 주도·계획·지휘하지 않고, 매우 단순한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경우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 경우

- 양형실무상 주요 감경사유로 고려되고 있고, 보이스포싱 등 사회적 피해가 큰 사기범죄의 전제가 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서 피고인 스스로 추가범죄를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여 범죄발생 위험을 제거한 것은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2) 특별가중인자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다량의 접근매체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행위를 하거나 그로 인한 범죄수익이 매우 큰 경우는 결과의 불법성이 크고, 보이스포싱 등 후속 범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증가하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인정됨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동종 누범

3) 일반감경인자

▣ 생계형 범죄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특

성을 감안하여 특별감경인자(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나 수사에 협조한 경우 일반감경인자로 고려함이 타당함

● 양형인자의 정의

-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과 후속범행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관련자 처벌 및 후속범죄 저지 등 수사에 기여한 경우를 의미한다.

■ 소극가담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 처벌 전력 없음

4) 일반가중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 유흥비나 도박비 마련과 같이 범행동기에 있어 특히 비난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보이스피싱,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등)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등 그 피해가 중대한 경우를 의미한다(다만 피고인이 후속범죄에 대해서도 기소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행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VI. 집행유예 기준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피해가 야기된 경우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범으로서 소극가담 ○ 생계형 범죄 ○ 실제 이득액이 없거나 경미한 경우 ○ 일반적 수사협조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이 고령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의 양형인자표를 기본으로 하되,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함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양형인자표상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중 조직적 범행)’,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또는 범죄로 인한 수익이 매우 큰 경우’를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은 대부분의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부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양형인자표상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되어 있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단순가담’, ‘자수, 내부고발 또는 범행(2유형 중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자발적 거래정지·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를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대부분의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통일성을 기하는 측면에서 긍정적 주요참작사유로 반영함

■ 그밖에 부정적 일반참작사유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는 다른 범죄의 집행유예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음